별첨_1.

<이사 선임 후보자 세부사항>

가. 후보자 성명/생년월일/사외이사 여부/최대주주와의 관계/추천인/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등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조재건	65.02.06	해당	무관	이사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이승욱	81.06.28	해당 없음	무관	이사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나. 후보자 주된 직업/세부 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등

성명	주된 직업	주요약력	해당 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조재건	現, 법무법인 맥 대표	현)법무법인 맥(유한) 변호사 전)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전)대법원 재판연구관 전)광주고등법원 판사 전)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 전)광주가정법원 판사 전)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사 전)광주지방법원 판사	해당 없음
이승욱	現, SK에코플랜트 팀장	현)SK에코플랜트 투자관리팀장 전)SK에코플랜트 O-TF 팀장 전)SK에코플랜트 경영분석팀 담당 전)SK 건설 Risk Management 담당	해당 없음

다. 사외이사 직무수행계획

1) 사외이사로서 회사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참여를 통하여 회사 업무 전반에 관한 주의 의무를 준수하고,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회사의 성장 발전에 기여하며,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것입니다.
2) 사외이사로서 회사와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가 적절하고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을 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3) 선관주의 의무, 충실 의무, 보고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사외이사가 준수해야 하는 윤리의식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라. 이사 선임후보자 확인

별첨_1-1, 1-2. 참조

마. 이사회 추천사유

- 사외이사 조재건 : 오랜 기간 법조계에 종사함으로써 취득한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회사 경영 전반에 걸쳐 윤리 경영 지원 및 투명한 이사회 활동을 통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회사가치 제고 및 경쟁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기타비상무이사 이승욱 : SK에코플랜트사에서 투자관리 팀장으로 에너지 관련 사업 검토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회사의 운용, 사업 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이사로서 해당 업무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별첨_1-1.

확 인 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 제3조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가.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된 직업 및 경력사항

나. 후보자의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 후보자인지 여부

다. 후보자의 추천인 및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라. 후보자와 해당 법인과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이 경우의 거래내역은 금전, 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담보제공, 채무보증 및 법률고문계약, 회계감사계약, 경영자문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 등(후보자가 동 계약 등의 계약기간 중 근무한 경우의 계약 등을 말한다.)으로 하되 약관 등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행하는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마.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2025년 2월 6일

보고자 조재건 (서명)

별첨_1-2.

2024.12.20 13:35 / 투자관리팀 / 이승욱 / 102864 ... 이 문서는 SK ecoplant의 보안정책 및 관련 법령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정보자산으로 무단 열람, 복사, 수정,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This document is the informational asset protected by SK ecoplant security policy and law. Unauthorized access, copy, revision, distribution are strictly prohibited

확 인 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 제3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가.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된 직업 및 경력사항

나. 후보자의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 후보자인지 여부

다. 후보자의 추천인 및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라. 후보자와 해당 법인과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이 경우의 거래내역은 금전, 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담보제공, 채무보증 및 법률고문계약, 회계감사계약, 경영자문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 등(후보자가 동 계약 등의 계약기간 중 근무한 경우의 계약 등을 말한다.)으로 하되 약관 등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행하는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2024년 12월 10일

보고자 이승욱 (서명)

별첨_2.

<감사 선임 후보자 세부사항>

가. 후보자 성명/생년월일/사외이사 여부/최대주주와의 관계/추천인/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등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서한도	62. 03. 01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이사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나. 후보자 주된 직업/세부 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등

성명	주된 직업	세부 경력	해당 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서한도	現, 세무법인 샘밀 광주지점 대표세무사	현)세무법인 샘밀 광주지점 대표세무사 현)골드클래스(주), 보광그룹 비상임감사 현)상장법인 남화토건(주) 세무관리 현)MG새마을금고 고문 현)광주전남재향군인회 감사 현)안도걸 국회의원 세무행정 정책위원장 전)선일회계법인 고문 전)서한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전)광주지방국세청 조사국 등 국세청 근무	해당 없음

다. 감사 선임후보자 확인

별첨_2-1. 참조

라. 이사회 추천사유

- 감사 서한도 : 비상근 감사로 최대주주 등 회사와 관련이 없는 외부인사로서 다년간의 국세청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감사업무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별첨_2-1.

확 인 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 제5호가목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1.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된 직업 및 경력사항

2. 후보자의 추천인 및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3. 후보자와 해당 법인과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이 경우의 거래내역은 금전, 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담보제공, 채무보증 및 법률고문계약, 회계감사계약, 경영자문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 등(후보자가 동 계약 등의 계약기간 중 근무한 경우의 계약 등을 말한다.)으로 하되 약관 등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행하는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2025년 2월 6일

보고자 서 한 도 (서명)

별첨_3.정관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개 정 이 유
제39조(이사의 책임 및 책임의 감면) ① 이사는 **업무하태** 등의 경우에 상법 등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사와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9조(이사의 책임 및 책임의 감면) ① 이사는 **업무해태** 등의 경우에 상법 등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사와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단순오기정정
제40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⑥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월 둘째주 중 1회, 넷째주 중 1회씩 개최하며**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주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단,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하며, 3일전에 통지 소집할 수 있다.** ③~⑤ 좌동 **⑥ 삭제**	이사회 운영체계 변경
부 칙 <신설>	**부 칙** (2025.03.31) 이 정관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추가]